

순천대학교 기획위원회규정

제정 1992. 7. 1.
개정 1994. 9. 26.
개정 1996. 9. 16.
개정 1999. 1. 9.
개정 2002. 2. 18.
개정 2002. 12. 31.
개정 2007. 12. 11.
개정 2019. 2. 13.
개정 2020. 2.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21조에 규정된 순천대학교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 심의한다.(개정 1999. 1. 9)

1. 대학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2. 대학운영에 관한 평가
3. 대학개혁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1999. 1. 9)
4. 기타 대학발전 계획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과장,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취업지원실장이 된다. (개정 2020. 2. 27.)

③ 임명직 위원은 이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과 기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9. 2. 13.]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2. 2.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교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 2. 18)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6. 9. 16)

② 운영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1996. 9. 16)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특정 안건을 심도 있게 연구·개발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 1. 9, 2002. 2. 18))

1. 교육개혁분과위원회
2. 홍보취업분과위원회
3. 재정·시설분과위원회
4. 삭제(2002. 12. 31)
5. 삭제(2002. 2. 18)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

장이 임명한다.(신설 2002. 2. 18)

③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2. 2. 18)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삭제(2002. 2. 18)

② 삭제(2002. 2. 18)

제8조(연구위원)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약간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제2조 각 호에 명시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원,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한다.(개정 2002. 2. 18)

③ 삭제(1999. 1. 9)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평가과 기획사무담당 주무자가 된다.(개정 2002. 2. 18, 2007.12.11)

② 삭제(2002. 2. 18)

③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2. 2. 18)

제10조(연구활동비 및 수당)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활동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 1.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순천대학교기획실설치및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1994. 9.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9.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홍보위원회규정 및 순천대학교전산화심의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02.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7.>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순천대학교 기획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평가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취업지원과장”을 “취업지원실장”으로 한다.

⑦부터 ⑧까지 생략